2014년 1월 2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월 20일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성장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# 보 도 자 료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• 문의 :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 김대희(042-481-4407), 사무관 박은주(4409)

## 제조창업기업의 공장 신·증설 시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등을 담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개정

### – '14.3월 '벤처·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' 후속 조치 –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21일(수)에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**부담금의 면제 기간 및 범위를 확대**하고, **청년창업자 우대** 등의 내용을 담은 **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(이하 창업지원법)**이 지난 **12일(월)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**하고, **2월3일 본격 시행**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○ 아울러 **교수·연구원**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연장신청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**휴직 기간을 현행 3년(연장 3년)에서 5년(연장 1년)으로 확대**하는 **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벤처기업법)도 개정**되어 **시행('14.12.30)**에 들어갔다.

□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'14년 **3월에 발표된 「벤처·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」(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)에 따른 후속조치**로서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특히, **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**에 대해 창업 후 **최대 5년간 농지 및 초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고,**

○ **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**에 대한 **부담금 면제 항목에 "대체산림자원조성비"를 추가**하여 **창업자의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**하였다.

□ 개정된 창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①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면제조항 신설

○ 그간 창업사업계획승인*을 받은 창업자는 개별법**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전용(轉用)부담금(3종) 및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음

*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창업7년이내 제조창업자의 공장 신·증설 시 **사업계획 및 공장설립 요건을 일괄 검토하여 의제처리**함으로써 **창업자의 시간·비용을 절감**하는 제도

** 농지법·초지법(창업 3년이내), 산지관리법(5년이내), 개발이익환수법(7년이내)

○ 금번 개정을 통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**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하는 특례를 창업지원법에 신설**하고, **면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**하였음

- 이에 따라 개별법 개정에 따른 전용부담금 대상, 감면율 및 면제기간의 축소 가능성을 없애고, **제조공장 설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**됨

### ②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항목에 '대체산림자원조성비' 추가

○ 기존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**11종의 부담금*을 면제하나,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됨**

* 공공시설 이익분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전기사용자 부담금,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, 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, 폐기물부담금, 4대강 물이용부담금

○ 그러나 실제 공장을 설립 시 농지전용과 초지전용 외에 산지도 전용하고 있어, **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(산지전용 부담금)도 함께 면제**하도록 규정 신설

* 토지용도별 공장용지 전용비율 : 농지 54.5%, 초지 1.2%, 산지 32%, 기타 12.3%

### ③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근거 마련

○ **청년실업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**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*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

* 단,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

### ④ 지역특화산업 관련 창업촉진계획 수립 및 창업 지원 근거 마련

○ 지역특화산업*과 관련된 창업 촉진을 통해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,

* 지역산업의 한 축으로, 기존의 **시·도의 지역전략산업, 시·군·구의 지역특화산업을 통합**하여 '지역특화산업'으로 관리

-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촉진계획을 수립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(예비)창업자를 발굴·육성 및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

###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지원 중단 시, 중단기간 범위 설정

○ 종전에는 창업투자회사, 창업투자조합, 중소기업상담회사,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중단의 근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, **중단기간은 법률에서 미규정**

○ 기존 규정 하에서는 **행정의 상대방이 지원중단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지적**에 따라 **'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'**할 수 있도록 **중단기간의 범위를 설정**

### ⑥ (예비)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

○ 최근 사회적으로 창업자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, 관련 지원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적 근거는 미약함

○ 이에 (예비)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□ 개정된 벤처기업법('14.12.30 시행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*① 교육공무원등의 창업휴직 허용기간 확대 (3+3년→5+1년)**

○ 종전에는 교수·연구원 등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였으나,

○ 교수·연구원의 **평균휴직기간은 5.3개월**로 평균 1.3회 연장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, 대학의 경우 **연장승인의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**하여 창업에 애로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

- **휴직 허용기간을 5년 이내에서 가능하고, 1년 연장**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**휴직연장 없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박은주 사무관(☎ 042-481-440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